地理學論叢 第32號(1998. 8), 75-101.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행태

정 수 열*

The Migration and Adaptation Behaviour of Foreign Workers in Korea

Chung, Su Yeul

요약 : 1995년 9월 현재 국내 외국인노동자는 10만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는 지속적으로 국내 고용의 일정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이들의 지리적 집중, 집단거주지형성, 내부집단의 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이주경로, 적응행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리적 집중(geographical concentration), 집단거주지 형성, 그리고 내부 집단(group)형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지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집중'에 관한 논의이다. 유입원인 중 흡인요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업종 -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가공업, 조립금속·기계장비업 - 의 소규모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들의 국내에서 직업경력에서도 나타난다. 그 구체적 집중지역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에 연수생의 반수 가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인축과 그 주변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에서 이주경로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지리적으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구직하여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지 형성'에 관한 논의이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거주지 형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가족단위로 이주해온 일부 중국교포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거주지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안 기숙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지리적 집중의 가능성이 높고, 이들 거주지가 회사에서 임대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나타나, 공장지대주변의 불량주택지구에 집단거주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들의 주된 이주방법이 '친구나 친척의 소개를 통한' 것이라는 점과 국내에서 이주동기에 있어 '친구나 친척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구직·이주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지리적 집중은 물론, 거주지 분화까지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라는 법적 지위에서 변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 집단형성'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한국사회로 적응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체류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활동공간(action space)를 넓혀 가면서, 동일국적 사람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에 대응하여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상호 부조형식의 'Committee'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하는 등 적극적 적응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집단형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는 국내로 이주에 있어서 이들이 젊고 미혼이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선택적 이주(selective migration)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앞서 살펴본 지리적 집중·거주지형성 가능성과 함께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외국인노동자, 이주, 적응행태, 지리적 집중, 집단거주지, 내부집단

Abstract : In Sep. 1995,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Korea goes beyond 100,000 and will keep its pace of increasing. So foreign workers will hold a part of domestic employment continuously and form their geographical concentration, group dwelling places, internal groups. In this contex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oreign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workers' inflow reason, migration route, adaptation behaviou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bout 'foreign workers'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pull factor of inflow process, they may concentrate in place which small firms - industries which have serious manpower problems such as textile · clothing · leather industries - is located. The half of industrial technical trainees concentrate on metropolitan Seoul, surrounding Seoul-Inchon axis. Also, their migration route in Korea enable us to realize foreign workers move to a distance through inducement of friends or relatives.
Second, 'the formation fo group dwelling place'. Until now, group residence does not come true. The reason is that foreign workers' lodging is company dormitary except some Korean-Chinese who rent a house. But they move through inducement of friend who have the same nationality and migrate for working together. So, they have the possibility of not only geographical concentration, but also the formation of group dwelling places at poor residences near factory district.
Third, 'formation of internal group'. Adaptation behaviour into Korean society shows that foreign workers who have longer length of stay and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widen their action space and associate with Koreans. For deducing risk in Korea, they form 'Committee' based on the same nationality and geographical accessibility. Also, my considering that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migration into Korea, it shows selectivity(young, unmarried and high educational background). Thus, they are likely to form internal groups.

Key words : foreign worker, migration, adaptation behaviour, geographical concentration, group dwelling place, internal group

Ⅰ.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995년 9월 15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불법체류자만도 6만 여명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 1천2백80만 여명의 0.8%에 해당된다. 95년 하반기 중에 2만 여명의 산업기술연수생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1995년 말에는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의 1%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은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왔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개별적인 외국인노동자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흡인요인(pull factor)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것이며, 교체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고용의 일정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집단(group)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특정지역에서의 지리적 집중(geographical concentration)과 집단거주지 형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토에 이색적 공간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①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국내로 유입하게 되었는가(유입원인), ② 어떠한 경로로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에서 이주는 어떠한가(이주경로), 그리고 ③ 한국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적응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 노동력 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의 전체적인 이주과정과 이들의 현지 적응행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외국인노동자의 집단형성가능성과 지리적 집중, 집단거주지 형성에 관한 논의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중 1990년 이후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국내로 유입된 연수생과 단기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적별로 그 수가 많은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사람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지역은 부천, 인천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국적별 체류자수의 비율에 따라 설문부수가 할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상의 장애와 접촉의 어려움 때문에 설문부수는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순으로 이루어졌다. '국내로 이주경로, 이주방법'과 '국내에서 이주동기와 이주방법'으로 나누어 이들의 생애이주(lifetime migration)를 설문조사하였으며, 체류기간별.학력별로 적응행태를 조사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사람에게는 영문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중국국적의 사람에게는 한자와 한글을 섞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응답자에 대한 설문은 영어나 한국어에 능숙한 동일국적 외국인노동자의 통역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내로 유입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둘째,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이주를 '국내로 이주'와 '국내에서 이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들의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행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주(migration)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주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과 환경'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지(origin)와 종착지(destin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 이주자'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 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공간적 패턴을 나타내는 가라는 물음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이주의 동기와 패턴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obert Woods, 1982: 131). 본 연구에서는 이 양자를 모두 적용하고자 한다. 즉,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입원인을 유출국의 관점과 유입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Ⅱ장), 이주주체, 이주방법, 이주동기, 이주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로 이주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성별, 학력별 선별성(selectivity)과 이들의 이주방법의 선택이 최종거주지 규모별로 그리고 개별 이주주체의 이주경력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 이주를 이주동기와 이주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이들의 국내에서 이주동기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본국에서 직업경력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이를 통해 유형화를 해 보고자 한다(Ⅲ장).

그리고 적응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한국에서 맞부딪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생활상을 파악해보고, 이에 대응하여 취하는 행태들을 자국민들간의 결합과 협동이라는 측면의 '폐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의 '개방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용은 체류기간별.학력별.본국에서의 최종직업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보고자 한다(Ⅳ장).

이상의 논의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숙련기능인력의 특성과 국제적 이주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지리적 집중과 집단거주지형성, 내부집단 형성에 관한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이 장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관한 일반사항을 이들의 유입현황, 유입원인과 지리적 분포 순으로 각각 절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특히 유입원인에 관해서는 유출국의 배출

요인(push factor)과 유입국의 흡입요인(pull factor) 양자가 작용하며, 이는 향후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 유입가능성에 관해 시사점을 줄 것이다.

1. 유입현황

'외국인 노동자'라고 함은 '취업을 목적으로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한 이로 이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법적 지위별로 살펴보면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업기술 연수생',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legal foreign worker)'란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으로 취업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체류자격은 취재.기술제공.상용.투자.교육연구.취업.흥행의 7개의 부문에 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company trainee)'은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연수생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고용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한 연수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으로 국내제조업체에 취업이 허용된 연수생이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초 관광비자나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현장단순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연수생 중에서 연수업체를 이탈한 이[1] 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illegal foreign worker)'라고 한다. 이들의 수적 규모에 대한 1995년 9월 노동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총수가 10만3천 여명에 이르고 합법취업자와 연수생을 합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0.2%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59.8%에 이른다고 한다(표 1. 참조). 특히 합법취업자[2] 1995년 7월말 현재, 6천4백75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전체 외국인노동자 6.3%를 점유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작고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으나 직업이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안정적이고 법적 지위 역시 안정적이기에 이하의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다음은 연수생에 관한 내용이다.

표 1.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수

단위: 명(%)

총 계	합법취업자	연수생	소계*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102,878	6,475	34,931	41,406	61,472
(100.0)	(6.3)	(33.9)	(40.2)	(59.8)

출처 : 1995년 9월 15일 노동부장관 기자회견시 발표.
*: 합법취업자수와 연수생수의 합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3항에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1년에 들어서면서 적극 활용되었다. 즉, 주택200만호 건설로 인한 건설업계의 인력부족과 제조업체에서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당해 10월에 외국에 직접.합작투자산업체가 현지고용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해 국내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3]. 같은 해 11월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허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연수생중 연수업체이탈자는 1995년 7월 31일 현재, 8,704명으로 당시 산업기술연수생 총수인 27,662명중 31.5%에 달한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3,938명, 필리핀 1,243명, 베트남 1,014명, 미얀마 620명, 네팔 477명, 방글라데시 450명, 파키스탄 441명, 스리랑카 373명, 이란 110명, 인도네시아 36명, 우즈베키스탄 2명 등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미발간자료).

2) 1995년 7월말 현재, 취업비자를 받은 합법취업 외국인을 직업별로 보면 외국어학원에서 회화지도가 3천44명으로 가장 많고 예술흥행 6백29명, 교수 5백97명, 기술지도 4백54명, 연구 2백7명, 전문직업 182명 등이다(노동부, 1995년 9월 15일 발표).

3)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255호) 및 그 시행세칙.

용하여 그 다음해인 1992년에만 9,076명이 들어 왔다. 그리고 1992년에는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불법체류자들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한다는 목표하에 상공자원부가 추천한 9,938명이 새로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듬해인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추가로 11개국에 걸쳐 2만 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연수생 모집, 알선, 사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4]. 그리고 1994년 9월에 정부는 연수생 1만 명의 추가도입을 결정하였고 이들은 섬유업종에 7,500명과 신발업종에 2,500명이 할당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실제로 1차모집에서 19,936명과 2차모집으로 6,347명이 국내에 연수생자격으로 들어왔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주로 15일간의 체류만이 허가되는 관광 내지 방문 사증(visa)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영세·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88년 올림픽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최영수, 1994). 그 수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실행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에 접수된 내용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며, 1992년 6월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불법체류자는 중국인 22,035명, 필리핀인 18,993명, 방글라데시인 8,950명, 네팔인 162명 등으로 총 61,126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중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42,965명이며, 이중 1.1%에 해당하는 485명만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외에 98.9%에 해당하는 42,480명이 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시한이 적힌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였으나 항공편사정 등을 이유로 1992년말까지 출국시한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 첫번째 출국시한연기조치 이후에도 3번에 걸쳐 연기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95년 법무부의 조사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25,970명(42.2%), 필리핀 8,276명(13.8%), 방글라데시 5,533명(9.0%), 네팔 2,222명(3.6%), 파키스탄 2,217명(3.6%) 등으로 그 총수가 61,472명으로 1992년 6월에 실시된 자진신고에서 접수된 수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출국권고 등 엄격한 조치를 행하였음에도 감소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총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등의 순으로 많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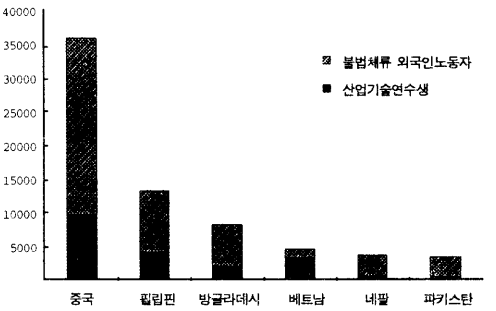

주 :중국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중 중국교포의 수는 20,722명이다.

자료: 1995년 9월 15일 노동부장관 기자화견시 발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미발간자료, 양자를 재구성.

〈그림1〉 출신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수 (95년 9월 현재)

2. 유입원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출신이며, 이들이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가별로 연수자를 선발하고 사후관리할 송출기관을 계약채결을 하였다. 1994년 7월 현재, 국가별로 해당 송출기관을 살펴보면 베트남에 LOD, SOVILACO, VINACONEX, 필리핀에 MAVERICK, P.P.C.C., LABOR, 미얀마에 MULTI-GATE, 네팔에 LUMBINI, 인도네시아에 BINAWAN, 파키스탄에 O.E.C., 이란에 F.E.O.S., 스리랑카에 MACKINNON MACKENZIE, 방글라데시에 BAY EASRERN, UNIQUE EASTERN, 태국에 SINCERE, 중국에 위해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천진입달공사, 흑룡강국제공정기술합작공사, 연변해외경제기술합작공사, 길림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무순대외건축안장공정총공사, 건축공정총공사, 연흥총공사가 그것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 225).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그들의 비중은 전체 내국인노동자의 1%를 차지할 정도를 급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유입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이들의 지속적인 유입에 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입원인을 유출국의 관점에서와 유입국 즉, 한국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유출국의 관점

먼저, 유출국의 관점에서는 첫째, 유입국과의 경제발전의 격차를 들 수 있다. 단적인 예로, 1992년도의 1인당 국민소득(GNP)을 살펴보면 한국이 6,790달러인 것에 비해 중국 380달러, 필리핀 770달러, 방글라데시 220달러, 네팔 170달러로 거의 10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율과 부양인구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은 2배에서 많게는 4배정도, 부양인구비에서는 2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둘째로, 환율의 차이로 인한 임금수준의 격차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달러의 급격한 가치변화는 더욱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는데, 아시아 주요국들의 대미달러 환율변동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력 수입 4개국 -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 - 의 대미환률은 크게 가치상승으로 결과되었는 데 반하여 저소득국들에게는 대미환율이 대폭적인 가치하락을 보임으로써 이 시기에 아시아 고소득국과 저소득국간에 달러표시로 본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우현, 1994: 4~5).

2) 유입국의 관점

유입국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에서의 인력난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1950-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er)의 노동시장 유입이 1980년대 중반부터 종결되었기 때문이며, 단순.미숙련 노동력의 저수지(labour pool)로 기능하였던 이농 노동력이 도시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화와 같이 진전된 고학력화는 사무.서비스직의 선호를 부추겨 제조업에서의 인력난을 가중시켰다(설동훈, 1989).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난은 정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동부의 「고용전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3월말현재 10인 이상 사업장 총노동자 4,563,502명중에서 250,108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직종 평균 부족률이 5.48%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제조업에서의 부족인원은 196,845명으로 전직종 부족인원의 78.7%를 차지하

표 2. 아시아7개국의 인구수, 부양인구비(1994년도), 및 인구증가율

	1인당 GNP($US)	1994년 중간인구 (단위: 천명)	인구성장률(단위: %)*		부양인구비**
			1984-1989년간	1989-1994년간	
방글라데시	220	118,142	9.49	10.92	820
중 국	380	1,222,017	8.01	7.27	58
미 얀 마	210	45,573	8.79	11.37	79
네 팔	170	21,601	13.45	17.13	153
필 리 핀	770	67,898	12.64	12.98	78
스 리 랑 카	540	18,121	7.71	7.82	276
한 국	6790	44,453	4.88	4.89	49

*: 인구성장률 = (현재연도인구/기준연도인구 - 1) * 100
**: 부양인구비 = (0~14세 인구수 + 60세이상 인구수) / 15세~59세 인구수 * 100
자료: UN, 1993, 「Demographic Yearbook」.
UN, 1994, 「ESCAP Population Data Sheet」.

고 있다. 또한 제조업 노동자의 기능정도별 부족률은 미숙련기능자, 반숙련기능자, 숙련기능자, 지도기능자의 순으로 높다. 기능정도가 높을수록 부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미숙련기능자는 부족률이 20.13%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의 부족률이 10.11%로 가장 높고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노동력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 업종은 지역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건설업 등) 혹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기계.주물.단조.열처리 등의 제조업) 및 상품의 성격상 신속함을 요하는 것(출판.인쇄업 등)이 많다. 그리고 이들의 생산을 맡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해외이전을 염두에 둘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부족률이 높은 이러한 업종에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사업장규모별로 생산 및 관련직 노동력 부족률을 살펴보면, 1991년에 종업원수가 10-29인 규모의 부족률이 15.32%로 가장 높고 30-99인 규모가 12.58% 순으로 규모가 커질 수록 부족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노동부, 1991, 「고용전망조사보고서」). 또한 연수업체 선정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는 연수생의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아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수업체 수로 보아서는 기업규모가 21-50인 규모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연수인원수로 보아서도 기업규모가 21-50인과 51-100인 규모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유출국과 한국간의 경제적 격차와 한국의 인력난이 그 원인이며, 외국인노동자들은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분야에 특히,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수생 대부분이 종업원수가 11인~100인인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이 일하고 있는 곳이 연수생들을 배당받지 못할 정

표 3. 산업별 노동자의 부족인원과 부족률 및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수

	부족인원	부족률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취업자	
			수	분포(%)	수	분포(%)
제조업	196845	7.02	20947	100	8984	98
음식료, 담배	6937	4.13	-	-	-	-
섬유, 의복 및 가죽	77648	10.11	5545	26	2890	32
목재 및 나무제품	4999	9.52	1830	9	896	10
종이, 인쇄 및 출판	4566	3.82	890	4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3956	4.85	2924	14	1159	13
비금속광물	5278	4.65	721	3		
제1차 금속	4496	5.21	960	5	-	-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72187	6.40	7351	35	1949	21
기타제조업	6778	8.23	726	3	2090	23
건설업	4320	3.17	-	-	161	2

출처: 노동부, 1991, 「고용전망조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5,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입국현황」.
법무부, 1994, 「자진신고 외국인 처리현황」.

도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여건을 생각한다면 영세 사업장이면서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내국인의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리적 분포에 관해 살펴보겠다.

3. 지리적 분포

외국인노동자의 지리적 분포는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해 배분된 연수업체와 연수인원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수업체 선정은 연수생을 연수시키고자 하는 연수업체가 '연수업체추천신청서'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스스로가 일괄적으로 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님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지리적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한 기업의 연수생는 해당 사업장의 생산직 상시 고용자의 10~20%내외로 정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5).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업체 및 연수생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수생의 49%가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사업체수의 전국에 대한 비중이 1971년에 57.1%에서 1991년에 81.3%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집중원인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수의 전국에 대한 비중도 53.5%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1991).

그렇다면, 연수생의 반이 집중된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 연수생수로 서울.경기 시.군별 분포와 제조업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천, 서울, 안산, 부천의 경인축을 따라서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에 제조업의 종사자수가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연수생들이 제조업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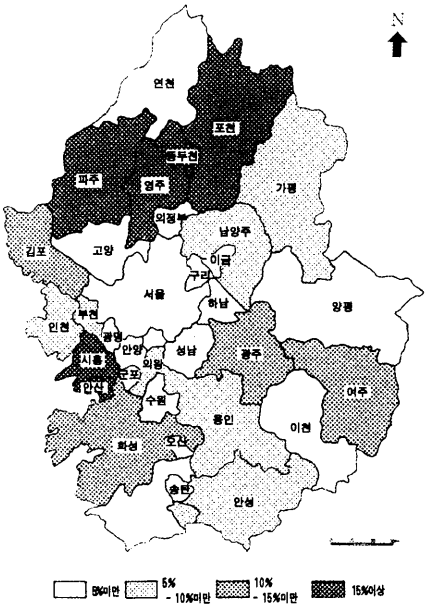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1991.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미발간자료.

〈 그림 2 〉 수도권 시군별 제조업종사자수 대비연수생 분포 비율(1995년 5월말 현재)

수도권지역내에서 분포비율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2〉과 같다. 여기서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산재하는 서울 외각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Ⅲ. 이주

외국인노동자의 이주패턴과 생활상 및 적응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앞서 경인축에 연수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부천.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국적별 수에 따라 설문부수가 할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그들과 접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순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총 수합된 설문부수는 162부이며, 중국국적의 사람은 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사람에게는 영문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중국국적의 사람에게는 한자와 한글을 섞은 설문지를 받았다. 응답자들 중 현재 연수생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두 명에 불과하였다.

표 4. 국적별 설문부수

국 적	방글라데시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미얀마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합계
설문부수	33	34	2	8	55	6	24	162

1. 국내로 이주

여기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국제적 이주를 하게 되는가라는 이주 주체에 관한 물음과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가라는 이주경로에 관한 물음에 답하면서 국내유입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 주체에 관해서는 연령, 성별, 학력별로 선택적 이동이 나타남을, 그리고 이주경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본국에서 최종거주지와 개인적 이주경험이 이주방법선택에서 개인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밝히고자 한다.

1) 선택적 이주 - 연령별/성별/학력별

인간의 노동력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개인의 교육,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각 개인의 노동력 생산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게 되고, 노동력의 차이는 각 개인의 행동에 다르게 반영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논한 인구이출의 동기와 과정은 노동력유출의 의미를 가지는 인구이출의 형태에 반영되어 인구이출은 개인의 사회, 경제수준에 따라서 선택성(selectivity)을 띠게 된다(김기혁, 1982: 86~87). 이러한 관점하에서 설문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주체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국에 들어올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단연 20대초반과 후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인 경우가 108명으로 6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응답자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젊은 연령층이 많은 것은 학교를 졸업한 후 첫번째 직장이 한국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새로운 상황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국적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연령층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상 장애나, 외모상 차이가 없어서 이주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성별과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주지 즉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육체적 노동이 심한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우 회교권국가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문화적 특성때문에 국내 외국인노동자로 들어온 방글라데시국적 여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이주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에 의해 이주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젊은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설문대상국가들이 조혼의 풍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남자미혼이 가장 많고, 남자기혼, 여자기혼, 여자미혼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교육년수별로 선택적 인구이동이 나타

난다. 한국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4%로 나타났다. 일국가내에서 이주보다 국제적 이주와 같은 이주비용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곳에 대한 정보의 획득에 용이한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년수가 대학재학중이나 대졸이 전체 응답자의 32.1%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력유출국의 배출요인(push factor)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주경로

이주의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를 하였다.

첫째, 각 개인의 성장지역이 농촌 혹은 농촌중심도시(인구10만미만)인가, 아니면 인구10만이상 도시 혹은 대도시인가이다.

둘째, 성장지역을 벗어나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셋째,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인력송출회사 혹은 한국의 해외투자기업을 통한 연수생으로 들어 왔는가, 사설 브로커(Broker)를 통해서 들어 왔는가, 친척.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들어 왔는가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본국에서 최종거주지 규모를 보면 농촌. 농촌중심도시와 인구 10만 이상 도시[5]가 각각 49.3%와 48.2%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국으로 이주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5%로 소수였다. 최종거주지의 규모와 이주방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종거주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자 모두 '친구.친척의 소개'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리고 '연수생'으로 들어오는 경우 법적 지위면이나 고용면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어서 이주비용이 낮기에 논외로 한다면 불법체류를 각오한 이주방법인 '브로커'와 '친구.친척 소개'와 최종거주지의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제적 이주와 같은 이주비용이 높은 경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종거주지 규모가 인구 10만이상 도시인 경우 '친구.친척 소개'의 이주방법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62.9%를 차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타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인구 10만이상 도시에서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주비용 - 심리적 불안 등 - 을 줄인다고 할 수 있다). 제3국을 경유한 예로, L氏(네팔, 30세)는 23세때 2년간 일본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이어 2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바하린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91년에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로, 본국에서의 이주경력의 유무를 살펴보았다. 이주경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수는 이주경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2배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층이 낮고 본국에서 직업이 학생인 사람이 38명으로 응답자의 2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된 본국에서의 최종거주지와 이주방법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주경력유무에 상관없이 친척.친구의 소개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주경력이 없는 사람은 이주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친척. 친구의 소개로 들어온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주경력이

5) 참고로 아시아 7개국의 1994년도 현재 도시화율과 도시인구증가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방글라데시	중 국	미얀마	네 팔	필리핀	스리랑카	한 국
도시화율	17	28	25	12	44	22	74
도시인구증가율	5.9	4.3	3.3	6.9	3.4	2.2	2.3

자료 : UN, 1994, {ESCAP Population Data Sheet}.

없는 사람에 비해 브로커를 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다 적극적인 이주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국내에서 이주

앞에서 살펴본 경로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는 여하의 원인에 의해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일부 중국교포를 제외한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가 공장기숙사나 회사에서 임대한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구직(job search)은 이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주동기와 이주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이주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국에서 직업경력과 한국에서 직업경력 간의 상호 비교를 해보겠다. 이러한 국내에서 이주경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양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 직업경력

먼저 본국에서 직업은 설문조사 결과 총설문응답자 162명이 1인당 1.31개 정도의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그 연령층이 낮다는 점과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갓 벗어난 사람, 즉 한국에서 직업이 첫번째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라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 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학생(18.3%), 서비스업(17.0%), 농림수산업(12.7%), 공무원(11.8%), 교사(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경력을 보아, 농림수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인임을 고려한다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의 사람들은 모두 자국내에서 일정정도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GDP 비중을 기준으로 설문대상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를 비교한 것인데, 설문대상국가의 1차산업 비중은 20% 이상으로 한국의 8.8%와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비중이 중국을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경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에서 종사한 직종을 살펴보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사람이 목축업, 제조업, 건설업에종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수가 162명임을 고려할 때,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업장 총수는 293개로 일인당 평균 1.81개의 직장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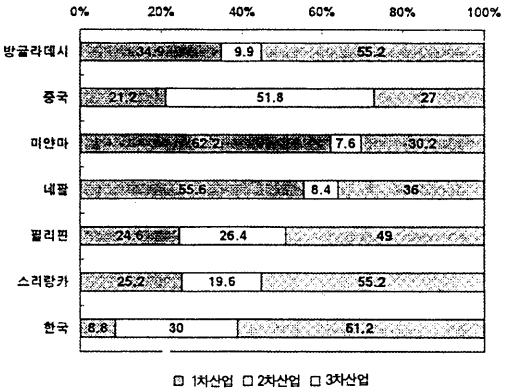

자료 : United Nations, 1992,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Main Aggregates & Detailed tables」, part Ⅰ, Ⅱ.

〈 그림 3 〉 아시아 7개국의 산업대분류별 GDP의 비중

O氏(네팔, 29세)의 경우 2년동안의 한국생활에서 직장을 9번이나 바꾸었다고 한다. Ⅲ장의 2절에서도 논의한 바 있지만, 종사업종이 인력난이 심각한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업',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중국인이었는데, 이는 중국인이 외부로 개방된 작업장에서 외모상 한국인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J氏(중국교포, 남47세)는 1992년 3월 한국에 들어와 건설현장에서의 힘든 노동으로 건강

이 약화되자 한국인 노동자의 소개로 화성군 장안면의 돼지농장을 소개받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같이 외국인노동자의 본국에서 직업력과 유입국인 한국에서 직업경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본국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한국으로 이주, 즉 국경을 넘어서면서 그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격하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상의 차이는 국내에서 잦은 이직을 일으킬 수 있다.

표 5. 국내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종 분포

(괄호안은 응답자수)

	종사경험	종사경험비율
목 축 업	3(2)	1.0
제 조 업	257	87.7
음식료, 담배 제조업	3(3)	1.0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44(33)	15.0
목재 및 나무제품	30(24)	10.2
종이, 인쇄 및 출판업	5(3)	1.7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68(49)	23.2
비금속광물	20(20)	6.8
제1차 금속	19(17)	6.5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업	52(41)	17.8
기타 제조업	16(11)	5.5
건 설 업	31(13)	10.6
기 타	2(2)	0.7
계	293	100.0

참고 : 종사했던 업종을 모두 기재하도록 함.
자료 : 설문조사.

2) 이주동기와 이주방법

이상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본국에서 직업경력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한국에서의 제조업에서 종사는 낯설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본래 국내로 유입될 때부터의 목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점과 함께 국내에서 잦은 이주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지역을 모두 응답하게 히였다. 그 결과, 빈도로 보아 서울.부천.인천.김포지역이 많은데 설문조사가 부천.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경력이 수도권 전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부산, 김해, 울산, 대전, 천안 등 지방도시에서 거주한 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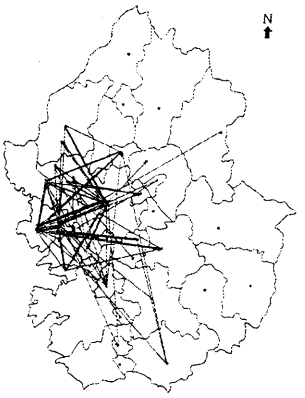

자료 : 설문조사.

〈 그림 4 〉 수도권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방향

다음으로 이주방향을 살펴본 〈그림 4〉를 보아도 수도권 전체지역에서 서울.부천.인천.김포지역으로 이주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개별 지역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친구나 친척,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이들 상호간에 연점을 고려할 때, 이주거리가 상당히 먼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지역에 본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직을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이러한 상호간 연락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위험을 줄이며, 이주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이주는 동일국적의 사람들을 통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동일국적간의 지리적 집중을 낳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주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우선 이주동기는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들은 일차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재정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즉, 저임금과 임

금체불은 그들에게 이직을 하게끔 하는 동기가 된다. 친구들과의 연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임금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가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딴 곳보다는 조금 많은 임금으로 불법체류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5인미만의 사업장일 경우가 많고 이들의 부도의 위험은 상존해 있으며,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몇 개월씩 임금체불을 당하여 이직을 하게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힘든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본국에서 직업경력에서 나타났듯이 제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육체노동의 과중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면서 영세사업장이기에 이들이 종사하는 공장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한국인노동자와 문제'이다. 한국인노동자들이 이들을 저개발국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려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어를 알지 못하기에 작업능률이 떨어진다거나 생활상에서 오해의 소지는 다분하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나 친척과 같이 일하거나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장에 근무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히 가족과 같이 들어온 중국교포들에게 있어 주된 이직요인이 된다.

이상의 이주동기로 인해 선택하는 이주방법으로는 친구.친척의 소개를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사장을 통하거나 자신의 근무지 근처의 공장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듣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수준을 갖춘 친구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구직을 해주기도 한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통해서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Dahal(네팔 남28세)氏의 경우 첫번째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짐을 친구의 공장기숙사에 옮겨놓고 규모가 작은 공장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 회사의 수위가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두번째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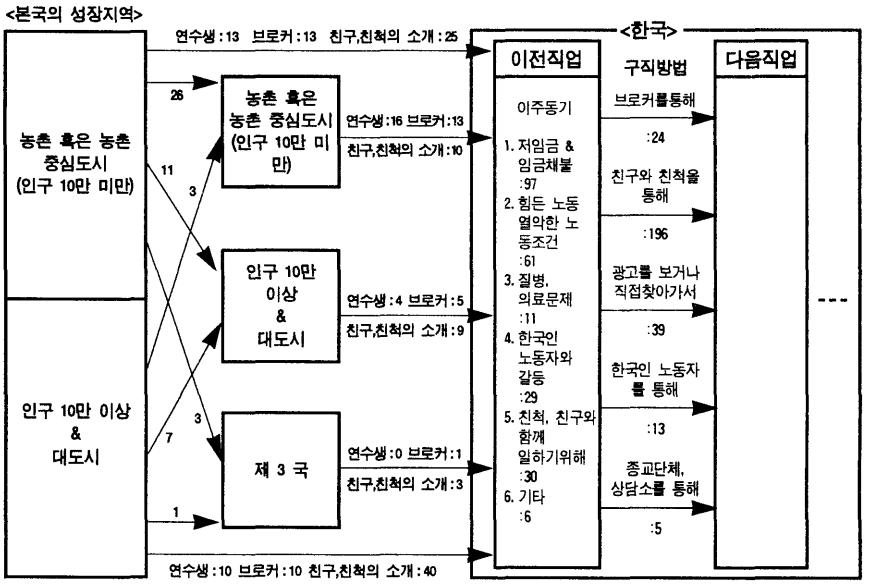

〈 그림 5 〉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이주경로

이지만 같이 일한 작업장에서 알게 된 한국인노동자를 통해서 직장을 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상으로 응답자의 lifetime migration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크게 국내로 이주와 국내에서 이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 그림 5 〉와 같다.

3. 유형분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각 개인의 생활사와 이주경로에 따라서 유형분류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국제적 노동력이동에 있어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같은 미숙련기능인력의 유입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형분류에 앞서 분류 기준으로 먼저 본국에서 최종직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유출국의 배출요인과 유입국의 흡입요인의 상호간의 관계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생활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력송출기관을 통한 연수생과 브로커 혹은 친구·친척의 소개를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이주방법상 차이에 따라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해당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 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한국에서의 직업이 자신의 처음 구직인 경우이다. 이는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연령층이 낮다는 것과 학력이 높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의 특성은 한국으로의 이주동기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국에서 적당한 직업을 찾지 못해서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며, 아울러 해당사람들의 이주경험이 적다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이주방법선택은 국내에서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연수생으로 들어온 경우와 관광비자를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로 남게 된 경우를 나누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본국에서 최종직업이 학생이고 연수생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D氏(네파르 남24세)의 경우이다.

"Kathmandu에 있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경제학, 문학, 문화, 정치과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때 삼촌이 부모님께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저를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네팔에 있는 송출기관인 룸비니(Lumbini)를 통해서 1994년 5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삯과 비자발급비로 룸비니에 2000달러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부천에 있는 연수업체인 ○○실업에서 플라스틱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연수생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각국에 있는 송출기관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와 같이 연수생으로 들어오는 경우, 연수업체를 벗어나 조금더 많은 돈을 주는 업체로 이직을 권유받는 사례도 많다. Patija Rai(네팔, 남27세)의 경우, 고향 Pamchther에서 대학 2학년으로 재학하던 중 부모님의 권유로 2000달러의 돈을 지불하고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때가 1994년 12월이다. 현재 부천에 있는 연수업체에서 플라스틱제품을 다루고 있는 그는 주위의 친구로부터 한국에서 사는 기간을 단축시키려거든 공장을 옮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로 남으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금 다니는 공장의 조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연수생임금보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수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로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한국에 들어 올 때부터 브로커(broker)를 통한 관광비자를 가지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저의 이름은 '마사라 미튜(Masara Mitu)' 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대학4학년 때 아

버지가 돈을 벌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인 1991년 12월 한국에 왔습니다. 이때 관광비자 발급과 직업소개비용으로 브로커(broker)에게 3750달러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공장은 용인에 있는 삐삐실공장입니다. 이 공장에는 방글라데시사람 6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를 소개한 브로커는 공장에서 80만원을 소개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침 8시부터 밤 2시까지 일하였습니다. 한달에 37만원을 받았고 잔업수당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오면서부터 편지나 전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러나 사장은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노동자와 싸움이 있었고, 3일후 귀국하겠다고 사장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밤 사장이 칼을 가지고 우리 숙소로 들어와 '너희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내일부터 일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 12월부터 2년동안 공장, 방, 식당 이 세 곳을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이 돈을 안주기 시작하여 3개월반 동안 전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담배는 물론, 비누도 사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장아들에게 1인당 만원씩 받아 우리 방글라데시 6명은 친구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성수동에 있는 빵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9개월 동안은 돈을 주었으나 또 3개월반동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가서 용인에 있는 여권을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본국의 최종직업이 학생이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경우가 많다. 또한 여기서 국내에서 이주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본국에서부터 알고 있었으며, 새롭게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본국에서 직장인신분으로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지주이다. 이들은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소수이다. 그러나 이들은 연령이 높고 기혼이며, 본국에서 안정적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비용은 높다. 그리고 이들은 이주방법에서 특징을 가지는데, 주로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한국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연결된 송출기관에 의해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저의 이름은 코 니(Ko nyi)입니다. 미얀마사람입니다. 저는 Myint氏와 함께 95년 7월 한국으로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저는 Yangon에 있는 UPI(United Plastic Industry)에서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기계에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한달에 450달러(약 35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기계에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미얀마사람이 모두 11명이 있습니다."

위 사례는 한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의해 국내로 연수생자격으로 들어 온 경우이다. 이들의 임금이 내국인노동자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연수생의 임금[6] 보다는 높아 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이주는 보다 많은 임금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차적으로 기술습득과 이로 인한 본

국에서의 소득증대를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Shelton Haris Chandra(남29세)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Chilaw를 떠나 Seeduwa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임금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컷팅(cuntting)을 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출기관인 MACKINNON MACKENZIE에 갔습니다. 여기에 항공료와 직업소개비로 2000달러를 주고 1993년 5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안양에 있는 S화학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든 컷팅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곳의 임금이 불법인 사람들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4년 5월 비자의 시한이 지나자 회사사장에게는 대사관에 간다고 말하고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경기도 광명시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광학기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한국으로 이주목적은 결과적으로 본국에서의 금전적 도움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임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한국에 오기 전에 최종직업이 비제조업부문에 종사하던 사람의 이주이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장인이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농임업이나 제조업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로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형은 구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주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은 두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과 본국에서 안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며, 한 차례이상의 이주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주방법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스리랑카국적의 Lokulyana氏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저는 35살입니다. 결혼을 하여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Matara에서 경찰로 일하던 중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개로 정부가 인정한 송출기관을 통해서 연수비자를 발급받아서 1994년 9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송출기관에 2000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다닌 공장은 경기도 횡성군의 고무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너무 힘들어 불법체류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95년 11월에 도망을 쳐서 친구가 일하는 회사기숙사로 도망쳤습니다. 그 친구사장의 소개로 지금은 고양시의 알루미늄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국내에 연수생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본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Amelita氏(필리핀, 여30세)의 경우 1994년 6월에 통일교 주선으로 연수생으로 들어 왔으며, 1994년 10월까지 월급 10-15만원 정도의 저임금으로 가정부로 일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육체적 노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에 국내 제조업체에서의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음은 브로커를 통한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경우이다.

"저의 이름은 Ko Wem으로 미얀마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6) 산업기술연수수당은 연수생의 출신국가별로 상이한데, 미얀마의 경우 230달러이다(노동부, 1994).

Kachin State의 Mohnyin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Yangon에서 변호사로 일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다시 Mohnyin으로 돌아와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혼자서 1995년 1월에 한국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왔습니다. 브로커에게 경비로 4000달러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김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o Wern氏는 본국에서 상위 대도시로 구직을 위한 이주를 한 경험이 있으며, 변호사와 같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개인사업을 하게 된 경우이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한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함으로써 적극적 이주의사를 표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친구·친척의 소개로 한국에 들어와 구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네팔인인 Vijal Baniya(남28세)氏의 경우 Vijonbu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1995년 6월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비행기값, 800달러와 직업소개비 300달러를 합쳐 1100달러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를 들여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이렇듯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친구·친척의 소개로 들어온 경우보다 싼 경비로 들어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브로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E. V. Samarakoon(스리랑카, 남26세)氏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빚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간다고 한다.

앞에서 중국교포의 경우 외모나 언어상의 내국인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에 연령에 따른 제약이 다른 동남아시아권의 외국인노동자보다 적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국에서 비제조업분야에 종사한 직장인인 두 번째 유형에 중국교포의 다수가 해당된다. 다음은 그 한 예인 H氏의 경우이다.

"저는 중국 해림시(海林市)출신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촌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친지방문비자로 들어 왔습니다. 이때가 1993년 1월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 올 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시간에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건설업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숙소는 현장근처의 기숙사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인 일꾼들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일전에 사귄 한국인 노동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구한 것이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큰일입니다."

여기서 외모상이나 언어상에서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중국교포들도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교포의 경우 관광비자가 아닌 친지방문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유형분류에서 학생신분으로 들어온 첫 번째 유형에서 유출국의 배출요인 작용함과 직장인 신분으로 들어온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서 유입국의 흡입요인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이주는 미숙련기능인력의 유입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신분으로 연수생과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로 이주와 제조업부문의 종사자로서 연수생으로 이주와 비제조업종사자로서 연수생과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로 이주를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국내로 유입되어 이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한국생활의 문제점과 적응행태

1. 한국생활의 문제점

적응행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한국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임금'과 '저축.송금'에 관한 부분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이주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며,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항공료나 소개비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빚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명(35.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은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먼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사업주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불경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던 독일의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은 대체로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월 200~260달러, 한화로 약 16~21만원 수준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월급은 40~50만원 수준으로 연수생보다 높다(표 6. 참조). 이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연수업체를 벗어나는 주된 이유가 된다.

표 6. 출신 국가별 산업기술 연수 수당, 1994년

(단위: 달러/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파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 데시
260	250	230	210	200

자료 : 노동부, 1994, {단순기능 외국노동력의 국내취업에 관한 정책대안}.

그리고 이와 함께 본국으로의 '저축.송금' 문제가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는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저축할 수 있어 도난의 염려가 적고 본인의 명의로 송금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저축.송금'이 불가능하다.[7]

그래서 자신의 짐속에 돈을 보관하다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외출을 할 때는 돈을 가지고 나가며, 송금에 있어서 자신이 잘 아는 한국인에게 의뢰를 하여 대신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송금상의 난점을 이용하여 국가간을 오가며 송금을 전담하는 브로커도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자국은행과 한국에 있는 은행간에는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출국들의 은행의 전산망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송금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예로, 스리랑카국적의 Gamini氏(남35세)의 경우 94년 7월 8일자로 본국의 Phuladelphia Nat'l Bank에 송금을 하였으나 이듬해인 95년 5월이 되어서야 송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둘째로, '언어'상에서의 문제이다. 물론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중국교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외일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는 본국에서 2주간의 한국에 대한 학습과 한국에 들어와서 1주일간의 교육을 시키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의 교육에서 일국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15일간의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맨 먼저 부딪치게 되는 벽은 언어의 장벽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외출을 삼가게 되고, 기술습득이 더디게 되며, 사업주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작업장에서 주의사항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여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를 당했음에도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기에 당하는 불이익도 상당하다. 한 예로 태국국적의 사람을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곤혹을 치른 적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수엔들러氏의 경우, 3

7) 재무부가 외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992년 9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한하여 국내소득의 해외송금을 허용하였으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어 도망쳐 나왔고, 노동문제상담소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명을 '상다리 공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상다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공장주변 한국인들이 부르는 말을 주워 들어 이것이 사업장명인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작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경우 정규학습과정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어서 이해하거나 나아가 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주거와 음식에 관한 문제이다. 주거에 있어서는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수업체에서 공장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공장기숙사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기에 구직과정에서 숙소를 사업주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노동자들은 한국국적의 친척집에서 거주하거나 월세로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들에 의해 제공된 숙소는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 규모가 영세하기에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있어 그러하다. 본국에서 관습상 하루에 한번은 꼭 샤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세사업장에 샤워장이 따로 설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방글라데시인들은 상대방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어 한국인의 목욕하는 관습과 달라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공중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표 7.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거주지이다. 여기서 중국인을 제외한 대부분 외국인노동자가 공장기숙사에서 거주하고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자신의 주거문제를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이 집단거주지 형성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임대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돈을 모아 공장지대주변의 불량주택을 구입하여 살도록 해주는 경우이며, 이러한 불량주택지구에 집단거주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과거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미혼여성 노동자이 주로 거주하던 구로구 가리봉 3동과 독산 1동의 임대형 주택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기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안재섭, 1989: 86). 반면에 중국인들, 특히 중국교포의 경우 친구나 가족과 월세방에서 거주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언어나 외모에 있어 내국인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다른 국적 외국인노동자들과의 차이점과 가족단위로 국내로 이주해온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원인이다.

표 7.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거주지

	공장기숙사	회사 전세집	친구와 월세방	가족과 월세방
방글라데시	67	4	1	-
중 국	21	10	10	16
미 얀 마	9	5	-	-
네 팔	110	16	4	1
필 리 핀	8	2	-	-
스리랑카	31	6	-	-
합 계	246(76.6%)	43(13.4%)	15(4.7%)	17(5.3%)

참고 : 국내에서 거주했던 모든 곳을 기재하도록 함.
자료 : 설문조사.

다음으로, 음식에 관한 문제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식사는 주로 공장에서 제공하여 주거나 외부에 있는 식당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에 의해서나 본국에서의 식생활습관으로 인해 이러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로, 방글라데시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도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기숙사 식당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먹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교포라고 해서 한국음식이 입에 맞는 것은 아니며, 중국교포 J氏(남33세)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지 3년이 지났지만,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음식을 꼽기도 했다.

넷째로, 의료.산업재해문제이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특히 기후와 육체적 노동이 심한 제조업에서의 종사는 각 개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어를 모르기에 주의사항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프더라도 참거나 정확한 진단없이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데에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높은 치료비를 지불하여야 하기에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린다. 그렇다고 연수생이 의료문제에 관해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예로,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L氏의 경우 목에 혹이 생겨서 개인병원에 암일지도 모른다고 일차 진료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회사측에서는 본국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병이므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으며, 귀국조치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L氏는 한국에 올 때 빌린 돈때문에, 귀국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산업재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사망사고인데, 중국교포인 유氏의 경우 돈을 벌어오겠다던 부친이 한국에서 1994년 8월 15일에 사망하였다. 유가족이 없으면 장례를 치룰 수 없다고 하여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결국 아들인 유氏가 한국에 들어와 용접공으로 일을 하여 265일만에 장례를 치룬 일도 있었다. 1994년 2월 7일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95년 4월에 공장기숙사에서 가슴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태국국적의 Winia Polbut씨의 경우에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업장내에서 사망하였기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서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망사고 이외에도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사고들도 많이 발생한다. 방글라데시인인 Aska氏의 경우 송탄에서 근무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고 1개가 마비되는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한다. 그 돈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영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나 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이슬람의 전통때문에 본국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표 8.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문 제	한국어	질병·의료	주거	기후	음식	불법	없다	합계
응답자수	48	29	18	15	13	27	4	162
	(29.6%)	(17.9%)	(11.1%)	(9.3%)	(8.0%)	(16.7%)	(7.4%)	(100.0%)

자료 : 설문조사.

표 8.은 설문조사에서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하나만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2. 적응행태

다음으로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적응행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국민들간의 결합과 협동이라는 측면의 '폐쇄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과 한국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의 '개방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용은 자신의 학력과 한국에서 체류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다. 체류기간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95년 9월말을 기점으로 1년미만, 1년에서 2년사이, 2년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학력은 고졸미만과 대졸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언어상 장애

와 외모상 차이가 없는 중국교포는 절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8].

1) 폐쇄적 네트워크의 활용

먼저 폐쇄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알아보겠다.

본국과의 연락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는 친구나 친척과의 만남은 이국생활에서 힘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에서 이주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도 '친구.친척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저녁에나 일이 없는 휴일에 친구.친척을 만나는데 만남은 주로 자신의 숙소나 친구.친척의 숙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자신의 처지가 불법체류자이기에 외부 한국인 사람들에 눈에 띄는 것은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주말에 '절이나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장소나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같은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체류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활동공간(action space)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9].또 다른 폐쇄적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단체 혹은 모임을 형성을 들 수 있다. 주로 한국에 와 있는 친구나 친척끼리 상호연락이 되다가 한 사람이 산업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모이게 되어 단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동일 국적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네팔인들의 경우 1993년에 'Nepal Consulting Committee(NCC)'라는 명칭으로 지역별로 대표를 선출하여 'President'라고 부르는 단체장을 뽑는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인들은 'Bangladesh Committee'를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는다. 상조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모임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일국적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사항들이다. 상호부조 형식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결정하기도 한다.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문에 대해서도 의견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스리랑카인들도 Committee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특히 네팔의 경우 격주로 'Nepal Sandesh'라는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수기, 본국에서의 소식, 문학작품 등을 실고 있다. 이렇게 자국민들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집.출판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에서 본국에서 컴퓨터 화일을 가지고 와서 활자화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신문을 배포하는 것은 복사를 통해서이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팩시밀리를 통해서 전송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교포들이 주축이 되어 94년 5월 1일에는 중국노동자센터를 개소하고 95년 3월 26일자로 '중국노동자협회'를 만들었다. 400명의 회원을 가진 이 협회는 직선제로 70명의 대표를 선출하며, 각 회원은 회원증을 가지고 있다. 매달 회비 5천원을 내고 회원증에 도장을 찍는다고 한다. 한국생활에서 닷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고 있다.

2) 개방적 네트워크의 활용

다음으로 개방적 네트워크 활용에 관해 다루겠다.

앞절에서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습득은 외부 한국인과의 접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중국교포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어 수준과 학습방법을 체류기간별.학력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오래될 수록 대졸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응능력이 있는 젊고 학력이 높은 남성이 먼저 이주를 하고 그 이후에 적응능력이 좀 낮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Chain Migration'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할 수 있다(Paul White & Robert Woods, 1980: 37). 그리고 체류기간별 학력별 한국어

8) 중국교포 설문부수는 34부이다.

9) 법적 지위가 안정적인 연수생과 한국에서 체류자체가 불법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간에는 활동공간의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다수(98.7%)가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였다.

수준을 살펴보면, 체류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한국어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소수지만 체류기간이 2년이상 대졸자중 몇 명은 한국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대졸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2년이상인 사람들은 한국인과 한시간이상 대화를 85.3%가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높은 한국어수준을 보였다. 한국어의 습득방법으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습득하는 방법과 더 나아가 종교단체나 상담소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를 이용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며, 작업시간외의 자유시간에 영어로 된 한국어교본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적극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한국어의 습득은 한국으로의 주된 이주동기인 돈을 벌기 위함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국내 기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부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C氏(스리랑카, 남27세)의 경우에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근처의 사장들이 "당신과 같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 본다고 한다. 이는 작업능률향상과 산업재해예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 중 약 60% 정도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졸자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미얀마국적의 D氏(남33세)의 경우, 자신이 전에 다녔던 회사의 한국인노동자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체류기간별, 학력별 한국에서 기술습득 여부를 설문하였을 때도, 체류기간이 길수록 습득한 기술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술들은 용접이나 주조 등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대답하여 작업장에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습득은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것과 함께,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임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처음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전의 직장과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네팔국적의 Dahal(남29세)의 경우이다.

"저는 1992년 3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다닌 공장은 (전북)익산에서입니다. 컴퓨터 키보드(Computer Key Board)와 전화기 케이스를 만드는 플라스틱 사출기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2년 반동안 일했습니다. 여름휴가때는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 친척이 있는 울산의 바닷가에 가보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일하는 한국사람 60명과 친구로 지냈습니다. 용인의 친구와 같이 지내기 위해 용인으로 갔습니다. 용인에서는 쓰레기통, 세수대야, 김치통 같은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출기에서 나온 제품에서 나쁜 부분을 칼로 다듬다가 손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월급이 지급되고 하루 10시간의 일이 힘들어서 7개월동안 근무를 하다가 사장님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용인에서 알게된 니라쥬氏의 소개로 부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천에서는 대우전화기, 세탁기 뚜껑을 만드는 플라스틱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에 다닌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체류기간이나 학력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의 T氏(방글라데시, 남24세)의 경우가 적극적인 학습의지와 적응을 보이는 예가 될 것이다.

"1년후 고향(방글라데시)에 돌아갈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를 배우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컴퓨터를 배웁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곳은 공장

근처 학원입니다. 사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일이 끝나기 한시간 전에 학원에 갑니다. 하지만 텍스트북(textbook)이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는 것을 빨리 배워야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하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한국어 문제의 중요성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체육관련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상으로 체류기간별.학력별 적응행태를 폐쇄적 네트워크와 개방적 네트워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체류기간이 오래된 사람일 수록 양자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적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한 적응행태는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로 통합(integration)에 관한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12월에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브로커의 소개로 안양시 건설현장을 떠돌면서 용접일, 형틀목공 등 닥치는 데로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브로커를 통해서 직장을 구했으나 그 후 주변상황들을 알게 되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와서 구한 것입니다. 일이 없는 날이며 중국노동자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맹세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살기로 말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한국에 들어온 중국교포 S氏(남 27세)의 말이다. 지금 친구와 함께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그는 한국인과 자신은 동일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차라리 한국이 자신의 고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모나 언어구사에 있어 내국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남부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영주하여 생활하는데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주네팔 대사관에게 보내는 한 공장 사업주의 편지내용이다.

"존경하는 주 네팔 대한민국대사관님,
Angad Ku mar J氏는 우리의 매우 믿을 만한 동업자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그를 믿습니다. 우리는 J氏가 비자를 얻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J氏의 신분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인천의 남동공단에 일하고 있는 A氏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J氏를 한국으로 불러 들이기 위하여 자신이 다니는 공장의 사업주에게 부탁을 하였다. J氏를 동업자라고 소개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다.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주방법으로 친구·친척의 소개를 통해서 들어 옴은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족재결합(family unification)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체류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활동공간(action space)를 넓히면서, 동일국적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며, 위험에 대해서 상호부조형식의 Committee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어느 틈엔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현재 인간의 경제적 활동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음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블록화되어가고 있다. 즉, 유럽공동체(EC)가 유럽자유무역협회(EFTA)를 결성한 것이나,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의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세계화로 향한 기초초석임과 동시에 세계화에 대비한 대응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아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가 활성화되는 것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블록화의 경향은 다국적 기업과 같은 국제적 자본의 성장을 낳음은 물론, 각국의 해외직접투자(FDI)가 블록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의 이동을 낳게 된다. 현재 국제적 노동력 이동의 경향은 정주를 목적으로 한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보다 몇 년간 취업을 목적으로한 일시적 이주(temporary migration)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숙련도가 높은 기술자들의 이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단순기능인력의 국가간 이동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이러한 세계화.블록화 경향하에 발생하는 현상의 하나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향성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유입속에서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이주경로, 적응행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지리적 집중(geographical concentration), 집단거주지 형성, 그리고 내부 집단(group)형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시켜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집중'에 관한 논의이다. 유입원인 중 흡입요인(pull factor)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업종 -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가공업, 조립금속.기계장비업 - 의 소규모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국내에서 직업경력에서도 나타난다.

그 구체적 집중지역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에 연수생의 반수 가량이 집중하여 있으며, 특히 경인축과 그 주변지역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에서 이주경로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지리적으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구직하여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지 형성'에 관한 논의이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거주지 분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족단위로 이주해온 일부 중국교포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거주지가 자신의 다니고 있는 사업장안의 기숙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지리적 집중의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거주지가 회사에서 임대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나타나, 공장지대주변의 불량주택지구에 이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주된 이주방법이 '친구나 친척의 소개'를 통한 것이라는 점과 국내에서 이주동기에 있어서 '친구나 친척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구직.이주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계속적인 지리적 집중은 물론, 거주지 분화까지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라는 법적 지위에서 변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 집단형성'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한국사회로 적응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체류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자신의 활동공간(action space)를 넓히면서, 동일국적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며, 위험에 대해서 상호부조형식의 Committee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형성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내로 이주에 있어서 젊고 미혼이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선택적 이주(selective migration)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앞서 살펴본 지리적 집중과 거주지분화 가능성과 함께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지리적 집중, 거주지분화, 집단형성의 가능성을 이들의 이주와 적응행태를 살펴봄으로 타진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이들과의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광범위한 조사를 행하지 못했다는 점과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출신의 외국인노동자와 구별되는 중국교포에 관한 문제를 보다 깊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들 수 있다.

〈參考文獻〉

Alvar W. Carlson, 1994, 'America's New Immigration: Characteristics, Destinations, and Impact, 1970-1989',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31., No. 3., pp. 213~236.

Bade(ed.), 1987, 「Population, Labour and Migration in 19th- and 20th-century Germany」, BERG/SMP.

Carliene Kennedy-Brenner, 1979, 「Foreign Workers and Immigration Policy」, OECD.

Castles & Kosack, 1985,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eng & Bonacich, 1984, 「Labour Immigration Under Capit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L Tasy, 1994, 'Labor recruitment in Taiwan: a corporate strategy in industrial restructuring', *EPA,* Vol. 26., No. 4., pp. 583~607.

Desbarats, J, 1985, "Indochinese resettlement in the Unites States", *Annals of the Associations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5., pp. 522~538.

Duncan Campbell, 1994, 'Foreign investment, labour immobility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3., No. 2., 185~245.

E. Pugliese, 1993, 'Restructuring of the labour market and the role of Third World migrations in Europe', *EPD,* Vol. 11., No. 5., pp. 513~522.

Heisler, Barbara Schmitter, 1992, "The Future of Immigration Incorporation: Which Models? Which Concep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6, pp. 623-645.

Hussein A. Amery & William P. Anderson, 1995,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to a Lebanese Village", *The Canadian Geographer,* Vol. 39., No. 1., pp. 46~58.

Huw R. Jones, 1981, 「A Population Geography」, Chapter 8.9, pp. 199-278.

Keiichi Takeuchi, 1995, 'Some Problems regarding Ethnic Minorities in Italy - A Preliminary Survey of Foreign Labourers in Southern Italy', *Mediterranean World,* Vol. 14., pp. 121~136.

Lu-lin Cheng & Gary Gereffi, 1994, 'The Informal Economy in East Asian Development', *IJURR,* Vol. 18., No. 2., pp. 194~219.

Moore E. G. & Rosenberg M. W., 1995, 'Modelling migration flows of immigrant groups in Canada', *EPA,* Vol. 27., No. 5., pp. 699~714.

Nanda R. Shrestha, 1988, 'A structural perspective on labour migration in underdevelopmented countries', *PHG,* Vol. 12., No. 2., pp. 179~207.

OECD, 1991,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OECD, 1993, 「The Changing Cour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P. N. Jones, 1994,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foreign workers in the 1980s: the case of Germany', *EPA,* Vol. 26., No. 9., pp. 1435~1453.

Pang Eng Fong, 1993, 「Regionalisation and Labour Flows in Pacific Asia」, OECD.

Paul White & Robert Woods, 1980, 「The geographical impact of migration」, Longman.

Peter Jackson, 1985, 'Social Geography: race and racism', *PHG,* Vol. 9., No. 1., pp. 99~108.

Richard Black, 1991,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geographical perspectives and research directions', *PHG,* Vol. 15., No. 3., pp. 281~298.

Richard Harris, 1984, 'Residential segregation and class formation in the capitalist city: a review and directions for research' *PHG,* Vol. 8., No. 1., pp. 26~49.

Robert Woods, 1982, 「Theoretical Population Geography」, Longman.

Robin Cohen, 1987, 'Policing the Frontiers: The State and the Migrant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in J. Henderson & Castells (eds.), 1987, 「Global Restructuring and Territorial development」, pp. 88~111.

Roger, A., 1988, "Age patterns of elderly migr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emography,* Vol. 25. pp. 355~370.

Ruth Rohr-Z nker, 1989,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lderly migration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HG,* Vol. 13., No. 2., pp. 209~222.

Saskia Sassen-koob, 1986, 'New york City: Economic Restructuring and Immigration', *Development and Change,* Vol. 17., SAGE, pp. 85~119.

Takashi Oka, 1994, 「Prying Open the Door - foreign workers in Japan」, A Carnegie Endowment Publication.

Thomas F. Bowen & Delley S. Bowen(eds.), 1994, 「Countries of the World」, Vol. Ⅰ, Ⅱ.

UN, 1986, {Returning Migrant Workers: Exploratory Studie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Thailand.

United Nations, 1992, 「National Accounts Satistics: Main Aggregates & Detailed tables」, part Ⅰ, Ⅱ.

United Nations, 1992, 「Statistic Yearbook」, Vol. 37.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각년도.

Untied Nations,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ort", Statistical papers series A Vol. XLVII, No. 2. Data available as of 1 April 1995. pp. 8-11.

von Ernst Giese, 1978, Raumliche Diffusion auslandischer Arbeitnehmer in der Bundersrepublik Deutschland, *DIE ERDE,* Vol. 109, pp. 92-10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김기혁, 1982, '농촌인구이출이 농업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사례지역간 비교연구', 「지리학논총」 제9호, 81-99쪽.

김종일 외 3인, 1995,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경제와 사회」, 통권 제26호, 172~207쪽.

노동부, 1992, 「외국인노동자가 노동면등에 끼치는 영향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정책연구소, 1995. 4., 「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한통계협회,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박내영 外 4인, 1988, 「한국의 해외취업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峨山財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년도.

설동훈, 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통권 제15호, 113~144쪽.

설동훈, 1994, '국내 거주 이민노동자의 생활실태', 「포럼21」, 제10집, 한백연구재단, 72~95쪽.

안재섭, 1994, '구로공단의 산업구조와 공단주변지역의 인구 및 주택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Vol. 32., 69~94쪽.

유명기, 1995, '외국인노동자 차별의 구조', 「녹색평론」, 통권 제21호, 69~82쪽.

윤진호, 1994,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하대학교

출판부.

이 건 & 정요한, 1993,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 「외국인노동자와 인간의 기본권」, 제7권, 5~73쪽.

이우현, 1995, '아시아지역의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노동자 정책', 1995년도 제4회 지역연구 학술발표대회.

이욱정, 1993,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속의 일본적 의미논리', 「경제와 사회」, 통권 제19호, 291~308쪽.

이욱정, 1994,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희연, 1990, 「인구지리학」, 법문사. 제9.10장 380-485쪽.

조재현, 1985,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자의 의식세계 - 서독거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의 예', 「한국사회학」, 제19집, 여름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 「사업보고서」, 219~236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5,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

최영수, 1995,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수도권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외개발공사, 1989, 「외국인고용제도」.

한백연구재단 편집실, 1994,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력 이동의 동태', 「포럼21」, 제10집, 한백연구재단, 49~71쪽.